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인원 (2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임용예정시기
공업서기(전기)	1명	정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시설안전과(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공업서기(일반기계)	1명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공업서기 (전기)	1명	○ 시설 설비(전기·통신·소방전기·승강기 등) 업무 전반 -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및 에너지관리 업무 등
공업서기 (일반기계)	1명	○ 시설 설비(위생·냉난방·도시가스·소방기계· 승강기 등) 업무 전반 -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 시설물 유지관리 - 가스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에너지관리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채용 직급	응시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공업서기 (전기 및 일반기 계)	자격증 /자격증 및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대상 자격증</th></tr><tr><th>전기</th><th>일반기계</th></tr><tr><td>기술사</td><td>건축전기설비</td><td>기계,공조냉동기계</td></tr><tr><td>기능장</td><td>전기</td><td>-</td></tr><tr><td>기사</td><td>전기</td><td>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td></tr><tr><td>산업기사</td><td>전기</td><td>공조냉동기계</td></tr><tr><td>기능사</td><td>전기</td><td>공조냉동기계</td></tr></table>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 4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 전기: 전기설비 검사, 전기안전관리, 전기공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 일반기계: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자격증+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자격증+경력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및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 (예시) 주 00시간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미인정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한글번역본 첨부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다. 우대요건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최대 5년) * 직무관련분야: 응시자격요건의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경력은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자격증 제외)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가스
기사	전기,전기공사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가스

※ 자격증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경력 관련

- 별지2 ‘이력서 - 3.우대요건’ 란에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산정
- 응시자격요건의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최대 5년,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경력 제외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자격증 관련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증에 따라 차등 배점)
 -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자격증 제외, 2개 이상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임용예정 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급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면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총 4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 ‘상’ :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 : 보통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하’ :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평가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다.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재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6.9.15.(화) ~ '26.9.28.(월)	'26.9.22.(화) ~ '26.9.28.(월)	'26.10.8.(목)	'26.10.13.(화)	'26.10.23.(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umoh.ac.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공고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6.9.22.(화)~'26.9.28.(월)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 (우편번호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본관502호) 공무원 인사담당(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054-478-7098)
- 문의전화 : ☎ 054-478-7098 / 이메일 : maniks@kumoh.ac.kr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산업기사·기능사)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별지서식 제7호 참고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인지세 감면 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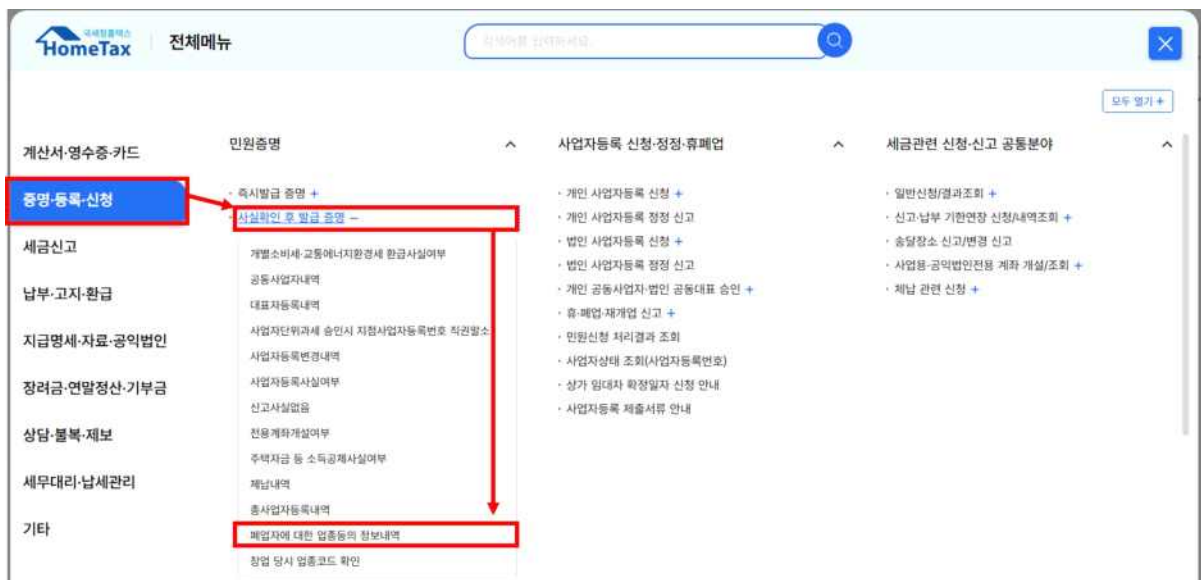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 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maniks@kumoh.ac.kr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11월 예정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054-478-7098)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공업서기)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업(전기)	공업서기	1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시설안전과(경북 구미시)
공업(일반기계)	공업서기	1명	

담당예정업무	○ 전기 : 시설 설비(전기·통신·소방전기·승강기 등) 업무 전반 -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및 에너지관리 업무 등 ○ 일반기계: 시설 설비(위생·냉난방·도시가스·소방기계·승강기 등) 업무 전반 -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시설물 유지관리 - 가스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에너지관리 업무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통계적 분석능력
------	--

필요지식	○ 전기(통신, 전기소방 등) 및 기계설비(위생도시가스기계소방 등) 공사설계 감독(감리) 및 하자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 전기(통신, 전기소방 등) 및 기계설비(위생도시가스기계소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식 ○ 전기(통신, 전기소방 등) 및 기계설비(위생도시가스기계소방 등)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
------	---

관련분야 : 공업(전기, 일반기계)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자격증 및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대상 자격증</th></tr><tr><th>전기</th><th>일반기계</th></tr><tr><td>기술사</td><td>건축전기설비</td><td>기계,공조냉동기계</td></tr><tr><td>기능장</td><td>전기</td><td>-</td></tr><tr><td>기사</td><td>전기</td><td>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td></tr><tr><td>산업기사</td><td>전기</td><td>공조냉동기계</td></tr><tr><td>기능사</td><td>전기</td><td>공조냉동기계</td></tr></table>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기능사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 전기: 전기설비 검사, 전기안전관리, 전기공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 일반기계: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최대 5년)																				
		* 직무관련분야: 응시자격요건의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경력은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자격증 제외)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대상 자격증</th></tr><tr><th>전기</th><th>일반기계</th></tr><tr><td>기술사</td><td>건축전기설비</td><td>기계,공조냉동기계</td></tr><tr><td>기능장</td><td>전기</td><td>가스</td></tr><tr><td>기사</td><td>전기,전기공사</td><td>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가스</td></tr></table>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가스	기사	전기,전기공사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가스						
구분	대상 자격증																					
	전기	일반기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계,공조냉동기계																				
기능장	전기	가스																				
기사	전기,전기공사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가스																				
※ 자격증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부착 - 8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해당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동의확인 및 자필서명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동의확인 및 자필서명
7.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응시자격요건(필수) 및 우대요건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7호) 서식 참고	○ (산업기사·기능사)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해당자 (별도 양식일 경우 별지7 서식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직무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만 제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구 분	내 용
	※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에 대한 제출 필요 - ‘담당업무’에는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관련분야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직무관련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 ○ 별지서식 제7호 외 제출 가능하나,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발급 확인자(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9.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에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1. 인지세 감면 서류	○ 해당자에 한함(인지세 감면 해당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불인정됨에 유의

<응시원서 표지용>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응시직급	제출자
※ 미작성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성명 (서명)

구 분		제출여부 확인
1. 응시원서 (정부수입인지 포함*) * 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1호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7.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 제출 ☐ 미제출
8.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 (※ 7호 서식 외 제출 가능)	☐ 제출 ☐ 미제출
9.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제출 ☐ 미제출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11. 인지세 감면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 년 월 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원본)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본인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응시자격		☐ 기사이상 자격증① ☐ 산업기사자격증 + 경력 3년② ☐ 기능사자격증 + 경력 4년③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없을시 “해당없음” 작성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A4용지 형태 (전자수입인지)로 발급 시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응시자격		☐ 기사이상 자격증① ☐ 산업기사자격증 + 경력 3년② ☐ 기능사자격증 + 경력 4년③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1. 응시번호는 1차 시험(서류전형) 발표 전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2.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합니다.
3. 시험당일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분야)을 기재함
[예시 : 공업서기(전기)]
- ③ 응시자격(필수)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선택 [기사이상 자격증① 산업기사자격증 + 경력 3년② 기능사자격증 + 경력 4년③]
-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해당여부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⑦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종이문서 출력시 응시원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금액 : 8급 5,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해당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 분야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응시 자격 요건	☐ 기사이상 자격증 ☐ 산업기사자격증 + 경력 3년 ☐ 기능사자격증 + 경력 4년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란 필수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 격 검 정 기 관
경 력	근무기관 (부서) ○○○○ (○○과)	근무기간 2000.1.1 ~ 2010.12.31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007.1.1.~12.31(질병휴직)	직 위 (직급) 과장
			담당업무
			근무 형태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2011.1.1 ~ 2017.12.31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7.12.31.(육아휴직)		과장	*구체적으로 작성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요건란의 경력 및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및 자격증을 제외하고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 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	--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2, 줄 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은 삭제 후 본문 작성

2026.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전기) 또는 공업서기(일반기계)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2,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은 삭제 후 본문 작성

2026. . .

작 성 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 동의여부,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필수

<별지서식 제7호> 참고용

발급번호 :

경 력(재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①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②주 소																				
경 력 사 항	③근 무 기 간			④ 직위(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상세기재)	근무형태														
	부 터	까 지	기간																		
	2018.1.1.	2020.12.31.	3년 0월 0일	과장			주40시간 주20시간														
	※년.월.일로 기재	휴직사항 기재																			
⑤근무 년한	예시) 총 근무기간: 14 년 월 일			⑥퇴직사유																	
⑦발급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or 법인번호 :) 주 소: 대 표 자: (직인) <table><tr><th colspan="2">발급 담당자</th></tr><tr><td>발급부서</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r><td>연 락 처</td><td></td></tr></table> <table><tr><th colspan="2">확 인 자</th></tr><tr><td>직 급</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able>								발급 담당자		발급부서		성 명	(인)	연 락 처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인)
발급 담당자																					
발급부서																					
성 명	(인)																				
연 락 처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인)																				

※ 자체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별지서식 제8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